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318호 2021. 9. 2.(목)

선 람	기 관 의 장

공 고

-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(예천군 공고 제2021-1059호)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(전화 650-6066)

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1년 9월 2일

예 천 군 수

1. 개정 이유

지역 문화 발전과 주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해 관람료를 무료화하여 관광객의 방문을 활성화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박물관 관람료 무료화 (안 제7조)
- 관람료 면제에 관한 조항(제8조) 삭제
- 박물관 관람료에 관한 별표(별표 1) 삭제

3. 개정조례안 : 붙임과 같음

4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9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(참조 : 문화관광과장)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: 찬·반 여부의 그 사유

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, 연락처, 기타 참고사항 등

다. 제출 방법 : 서면, 팩스, 전화, 전자우편, 방문 등

라. 보내실 곳

- 주소 : 우)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문화관광과
- 전화 : 054-650-8312, 팩스 : 054-650-8319
- 전자우편 : ggalguree@korea.kr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자치법규명 :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자치법규안 내용	의견	비고

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개정 이유

지역 문화 발전과 주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해 관람료를 무료화하여
관광객의 방문을 활성화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박물관 관람료 무료화 (안 제7조)
- 관람료 면제에 관한 조항(제8조) 삭제
- 박물관 관람료에 관한 별표(별표 1) 삭제

3. 개정조례안

붙임과 같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12조

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과 같음

다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라. 규제심사 : 기획감사실 의뢰 예정

마. 입법예고 : 9월 중 입법예고 실시

바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사. 성별영향평가 : 주민복지실 의뢰 예정

예천군 조례 제 호

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관람료)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.

제8조를 삭제한다.

별표 1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제7조(관람료 및 관람권) ① 박물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</u> <u>②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관람전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전액 반환할 수 있다.</u> <u>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람자로부터 별도의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. 다만, 제2호의 경우에는 군수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.</u> <u>1. 예천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이 주최 또는 주관하여 전시를 개최하는 경우</u> <u>2.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전시를 개최하는 경우</u> <u>④ 관람권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 <u>1. 어른관람권(만19세 이상~만64세 이하인 사람이 구매하는 관람권을 말한다)</u> <u>2. 청소년관람권(만13세 이상~만18세 이하인 사람이 구매하</u>	<u>제7조(관람료)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.</u>

는 관람권을 말한다)

3. 어린이관람권(만7세 이상~
만12세 이하인 사람이 구매하
는 관람권을 말한다)

4. 단체관람권(20명 이상이 입
장할 시 구매하는 관람권을
말한다)

제8조(관람료의 면제) 다음 각 호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
게는 관람료를 면제한다.

1. 국빈·외교사절단 및 그 수
행자

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
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
받는 국가유공자

3.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
받는 등록장애인으로서 장애
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(장
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
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
명 포함)

4. 하사 이하의 군인(의무경찰,
경비교도, 공익근무요원 포함)

5.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
공무원

6. 만6세 이하 영유아 및 만65세

<삭 제>

<u>이상 노인</u> <u>7. 유물을 기증하거나 위탁관리</u> <u>하는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</u> <u>한 자와 그 가족</u> <u>8.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</u> <u>박물관 행사에 초청받은 자</u> <u>9. 단체의 인솔 및 안내를 목적</u> <u>으로 하는 교원 또는 관광안</u> <u>내사</u> <u>10. 「다복 가정 희망카드」를</u> <u>소지한 가정의 세대원</u> <u>11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</u> <u>인정하는 자</u>	
--	--

참고 1

관계법령

【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】

- 제12조(설립과 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 자료의 구입·관리·보존·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관람료(제7조 및 제8조 관련)

(단위 : 원)

구 분	개 인			단 체(20인이상)		
	어 른	청소년	어린이	어 른	청소년	어린이
일 반	2,000	1,500	1,000	1,500	1,000	500
예천군민	1,500	1,000	500	적용하지 아니함		
관람료 면제	• 국빈·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• 국가유공자 •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) • 하사이하의 군인(의무경찰, 경비교도, 공익근무요원 포함) •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• 만6세 이하 영유아 및 만65세 이상 노인 • 유물 기증·위탁관리자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자와 그 가족 • 예천군이 박물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초청받은 자 • 단체의 인솔 및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교원 및 관광안내사 • 다복가정희망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세대원					
비 고	• 어 른 : 만19세 이상 ~ 만64세 이하 • 청소년 : 만13세 이상 ~ 만18세 이하 • 어린이 : 만7세 이상 ~ 만12세 이하 • 예천군민 : 주민등록을 예천군에 두고 있는 사람으로 신분증을 소지한 자					